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014. 04

한국토지주택공사

목 차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01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01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02
   가. 용도지역 / 02
   나. 용도지구 / 02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02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03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20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21
   가. 주택건설용지 / 21
   나. 상업·업무용지 / 37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43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47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48
   가. 주택건설용지 / 48
   나. 상업·업무용지 / 54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60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72
가. 교통처리계획 / 72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74
다. 기타계획 / 76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81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 81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 91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 96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98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 공간구성에 관한 사항 / 98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 99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105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106

■ 별첨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76,271	-	4,476,271	지고제230호 (08.12.31)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 1-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476,271	-	4,476,271	100.00%	
주거지역	소 계	1,914,702	-	1,914,702	42.77%	
	제1종전용주거지역	60,815	-	60,815	1.36%	
	제1종일반주거지역	248,345	-	248,345	5.55%	
	제2종일반주거지역	795,036	-	795,036	17.76%	
	제3종일반주거지역	477,047	-	477,047	10.66%	
	준 주 거 지 역	333,459	-	333,459	7.45%	
상업지역	소 계	1,120,233	-	1,120,233	25.03%	
	중 심 상 업 지 역	400,684	-	400,684	8.95%	
	일 반 상 업 지 역	719,549	-	719,549	16.07%	
녹지지역	소 계	1,441,336	-	1,441,336	32.20%	
	자 연 녹 지 지 역	1,441,336	-	1,441,336	32.20%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별첨 1-나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기정)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01	39,995	860,739	76	12,851	213,821	74	18,605	477,727	51	8,539	169,191
대로	11	12,132	414,351	1	9,664 (181)	6,895	6	8,531	306,958	4	3,420	100,498
중로	73	18,163	346,080	12	4,897	122,330	41	8,637	158,257	20	4,629	65,493
소로	117	9,700	100,308	63	7,773	84,597	27	1,437	12,512	27	490	3,200

※( )는 지구내 사항임

■ 도로 총괄표 (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03	40,471	868,746	76	12,851	213,674	76	19,081	485,998	51	8,539	169,074
대로	11	12,132	414,065	1	9,664 (181)	6,890	6	8,531	306,747	4	3,420	100,428
중로	74	18,573	353,868	12	4,897	122,245	42	9,047	166,174	20	4,629	65,448
소로	118	9,766	100,813	63	7,773	84,539	28	1,503	13,077	27	490	3,198

※( )는 지구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도로	9,664 (181)	제74호 광장	송정동 부산시계	일반도로		건고제379호 (81.10.12)	
기정	대로	2	1	34	주간선도로	1,166	광장	대로2-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2,003	대로2-1	대로1-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2	3	34	주간선도로	1,777	대로2-5	대로1-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2	4	34	주간선도로	910	대로1-20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2	5	34	주간선도로	1,987	대로1-20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2	6	34	주간선도로	688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3	1	27	보조간선도로	515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3	2	27	보조간선도로	2,032	대로2-1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3	3	27	보조간선도로	699	대로2-5	대로2-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대로	3	4	27	보조간선도로	174	광장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1,067	중로1-5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2	23	집산도로	852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3	23	집산도로	93	제4호 연결녹지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77	지구계 서측	중로1-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5	23	집산도로	332	중로1-4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6	23	집산도로	247	중로1-1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7	23	집산도로	245	중로1-2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8	23	집산도로	361	중로1-2	대로2-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9	23	집산도로	463	대로3-1	대로2-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10	23	집산도로	478	지구계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11	23	집산도로	465	대로3-3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1	12	23	집산도로	217	제4호 근린공원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	16	집산도로	383	중로1-4	중로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53	중로2-1	중로1-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	16	집산도로	162	중로2-4	중로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4	16	집산도로	527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5	18	집산도로	243	중로1-2	대로2-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6	18	집산도로	391	중로1-2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7	18	집산도로	201	중로2-6	중로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8	16	집산도로	178	중로2-9	중로2-9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9	16	집산도로	420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0	18	집산도로	620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1	18	집산도로	503	대로2-5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2	18	집산도로	205	중로2-13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3	18	집산도로	615	중로1-10	대로2-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4	16	집산도로	407	중로2-13	대로2-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5	18	집산도로	383	중로1-11	대로2-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6	18	집산도로	293	중로1-11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7	16	집산도로	201	중로2-16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8	16	집산도로	245	중로2-16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19	16	집산도로	187	제4호 근린공원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0	16	집산도로	204	중로2-23	대로3-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1	16	집산도로	245	중로2-23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2	16	집산도로	175	제5호 근린공원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3	18	집산도로	427	대로3-2	대로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4	18	집산도로	203	중로2-23	대로3-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	15	집산도로	44	지구계	중로2-1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6	15	특수도로	46	중로2-1	중로2-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7	15	특수도로	46	중로2-2	중로1-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8	15	특수도로	138	중로1-1	중로2-29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29	15	특수도로	25	중로2-28	중로2-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0	15	특수도로	69	중로2-4	대로2-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1	15	특수도로	50	제1호 연결녹지	중로2-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2	15	특수도로	64	중로2-4	중로2-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3	15	특수도로	38	중로2-3	중로2-2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4	15	특수도로	38	중로2-28	중로2-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5	15	특수도로	65	중로2-4	중로1-5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6	15	특수도로	42	중로1-5	중로2-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7	15	특수도로	65	중로2-8	중로2-9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8	15	특수도로	51	중로2-9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2	39	16	집산도로	17	제1호 근린공원	소로2-6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2	40	15	집산도로	66	제1호 전기공급설비시설	대로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2	41	15	집산도로	102	중로2-40	제1호 근린공원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신설	중로	2	42	18	집산도로	410	중로1-8	중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1	13	집산도로	467	중로2-1	중로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362	대로2-5	대로2-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3	13	집산도로	283	중로1-10	대로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4	13	집산도로	189	제8호 완충녹지	중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	13	집산도로	195	소로1-25	중로1-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6	13	집산도로	109	중로3-5	중로2-1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8	13	집산도로	153	지구계	대로2-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9	13	집산도로	205	중로3-8	중로2-14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0	13	집산도로	288	제7호 완충녹지	중로3-8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1	13	집산도로	245	중로2-15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2	13	집산도로	229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3	13	집산도로	212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4	13	집산도로	361	명지동1227-4	중로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5	13	집산도로	234	소로2-54	중로2-2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6	13	집산도로	131	소로1-62	대로3-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중로	3	19	13	집산도로	158	소로2-63	중로2-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3	20	13	집산도로	278	중로2-11	중로2-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3	21	13	집산도로	251	중로2-14	중로2-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3	22	13	집산도로	247	중로3-14	대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중로	3	23	13	집산도로	32	소로1-62	대로3-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43	소로1-28	소로1-2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18	소로3-30	중로3-2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68	소로1-7	소로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6	중로3-22	중로3-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36	중로3-22	중로3-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52	중로3-13	중로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21	소로1-11	대로3-3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57	소로1-12	소로1-11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238	중로2-19	중로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40	중로2-19	중로1-1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99	중로3-16	중로2-22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7	소로1-62	중로3-16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91	제1호 근린공원	대로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65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96	소로1-16	소로1-1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206	소로1-21	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40	소로1-18	소로1-2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48	소로1-21	소로1-1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497	중로3-3	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86	소로1-24	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06	소로1-22	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17	소로2-42	중로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402	중로3-5	중로2-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15	지구계 동측	소로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38	제6호 어린이공원	소로1-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353	중로2-14	중로2-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154	소로1-30	소로1-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69	소로1-28	소로1-2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99	소로1-28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82	소로1-35	소로1-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101	소로1-28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82	소로1-36	소로1-3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68	소로1-33	소로1-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69	소로1-33	소로1-28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78	소로3-29	소로1-4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8	10	국지도로	68	소로1-44	소로1-4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39	10	국지도로	67	소로1-44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0	10	국지도로	77	소로1-37	중로3-2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75	소로1-37	중로3-2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103	중로3-21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3	10	국지도로	75	소로1-38	중로3-2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03	중로3-21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5	10	국지도로	67	소로1-44	중로2-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16	중로3-9	중로2-25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54	소로1-49	소로1-4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54	소로1-49	소로1-4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49	10	국지도로	250	중로3-9	중로3-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0	10	국지도로	92	소로1-51	중로3-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1	10	국지도로	87	소로1-49	중로3-9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2	10	국지도로	203	중로3-10	중로3-10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08	소로1-55	중로3-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08	소로1-4	중로3-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5	10	국지도로	70	소로1-6	소로1-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6	10	국지도로	53	소로1-7	중로3-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7	10	국지도로	47	소로1-7	중로3-14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99	중로3-16	중로2-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59	10	국지도로	99	중로3-16	중로2-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0	10	국지도로	51	소로1-14	중로3-16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1	10	국지도로	27	소로1-63	소로1-6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2	10	국지도로	277	중로2-22	중로3-2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3	10	국지도로	347	소로1-62	중로2-2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4	10	국지도로	97	제4호 완충녹지	중로2-23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1	65	10	국지도로	182	제8호 학교	대로3-2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87	지구계 동측	중로3-10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07	소로1-64	중로3-15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27	8	특수도로	49	제1호 연결녹지	중로2-5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28	8	특수도로	48	중로2-5	소로2-29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29	8	특수도로	242	대로2-1	중로1-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0	8	특수도로	104	중로2-6	중로2-7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1	8	특수도로	97	중로1-2	소로2-30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2	8	특수도로	97	소로2-30	중로2-6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4	8	특수도로	33	중로3-20	대로2-5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8	8	특수도로	29	대로2-3	소로1-2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39	8	특수도로	29	대로2-3	소로1-2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0	8	특수도로	10	소로1-21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1	8	특수도로	10	소로1-21	지구계 동측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2	8	특수도로	26	대로2-3	소로1-2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3	8	특수도로	40	중로3-3	소로1-23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4	8	특수도로	36	소로1-23	소로1-24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5	8	특수도로	30	소로1-24	중로1-10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47	8	특수도로	20	중로3-10	제4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54	8	특수도로	10	중로3-15	대로3-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56	8	특수도로	9	소로1-64	대로3-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57	8	특수도로	17	제1호 근린공원	중로3-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59	8	특수도로	17	제1호 근린공원	중로3-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60	8	특수도로	26	소로1-16	중로1-1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61	8	특수도로	20	소로1-16	제1호 연결녹지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148	명지동2009-12	중로3-1	일반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2	63	8	특수도로	63	제2호 연결녹지	중로3-1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2	64	8	특수도로	33	중로3-19	대로2-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신설	소로	2	65	8	특수도로	66	중로2-42	대로2-5	보행자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1	소로1-25	지구계 동측	일반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24	소로1-49	중로3-8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20	중로3-8	소로1-52	보행자도로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0	소로3-24	소로1-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0	소로3-25	소로1-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0	소로3-26	중로2-1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0	소로3-27	중로2-1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0	소로3-28	중로2-1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31	소로1-52	중로3-10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20	중로3-10	제7호 완충녹지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24	중로3-21	대로2-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21	중로3-21	대로2-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20	중로3-9	대로2-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23	중로3-22	대로2-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20	중로3-22	대로2-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23	소로1-3	대로3-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19	6	특수도로	24	소로3-29	중로3-1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0	6	특수도로	48	제3호 어린이공원	중로3-15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20	소로2-25	중로2-2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25	소로1-62	소로1-14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26	소로1-63	소로1-62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8	소로3-6	소로1-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0	소로3-7	소로1-28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8	소로3-8	소로1-2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8	소로3-9	소로1-29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8	소로3-10	소로1-37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8	소로3-19	소로1-3	보행자도로		경자청고제33호 (13.7.24)	

※( )는 지구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2호선	• 신설 - 폭원:18m, 연장:410m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도로망계획 변경
	소로2-65호선	• 신설 - 폭원:8m, 연장:66m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413	-	28,413	-	
기정	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670	-	67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1,658	-	1,65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039일원	2,505	-	2,505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3,233	-	3,23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851-2일원	4,465	-	4,465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09-1일원	452	-	452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562-1일원	1,643	-	1,64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77-2일원	1,818	-	1,81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1,818	-	1,81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597일원	942	-	942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623-3일원	1,025	-	1,025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707	-	707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6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707	-	707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7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321-4일원	670	-	67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8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204-1일원	430	-	43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9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86-8일원	566	-	56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0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21-3일원	1,456	-	1,45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1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40-2일원	949	-	949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2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280-2일원	795	-	795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3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375-2일원	722	-	722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4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93-1일원	591	-	591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25	주차장	강서구 명지동 1090일원	591	-	591	경자청고제33호 (13.7.24)	

나. 공간시설

1) 광 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155	-	18,155	-	
기정	2	광장	일반 광장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15,908	-	15,90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광장	일반 광장	강성구 명지동 367-3일원	2,247	-	2,247	지고제230호 (08.12.31)	

- 이하여백 -

2) 녹지

■ 녹지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합 계	14	375,597	
경관녹지	2	65,035	
연결녹지	4	194,885	
완충녹지	8	115,677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75,597	-	375,597	-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강서구 명지동 1866-15일원	36,338	-	36,33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강서구 명지동 862-3일원	28,697	-	28,697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	녹지	연결 녹지	강서구 명지동 2111-1일원	20,323	-	20,32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녹지	연결 녹지	강서구 명지동 1981-1일원	21,246	-	21,24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녹지	연결 녹지	강서구 명지동 1653일원	14,838	-	14,83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녹지	연결 녹지	강서구 명지동 2755-6일원	138,478	-	138,47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379	-	2,379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2075-8일원	4,285	-	4,285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2825일원	3,863	-	3,86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2457일원	26,821	-	26,821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1627-3일원	20,036	-	20,03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1118-3일원	13,946	-	13,94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7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1102-1일원	35,157	-	35,157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9,117	-	9,190	지고제230호 (08.12.31)	

3) 공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합 계	15	1,033,953	
근린공원	5	1,012,421	
어린이공원	8	20,020	
소공원	2	1,512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33,953	-	1,033,953	-	
기정	1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630-1일원	807,460	-	807,46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2807-2일원	17,472	-	17,472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1830일원	9,180	-	9,180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4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1276-11일원	102,322	-	102,322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5	근린공원	근린공원	강서구 명지동 2626일원	75,987	-	75,987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241일원	6,013	-	6,01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561일원	2,193	-	2,19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172일원	1,566	-	1,56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318-1일원	1,509	-	1,509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6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1063-5일원	2,760	-	2,76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7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47-5일원	1,513	-	1,51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8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787일원	2,364	-	2,364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9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강서구 명지동 2784-1일원	2,102	-	2,102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1	소공원	소공원	강서구 명지동 1957-6일원	1,216	-	1,216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2	소공원	소공원	강서구 명지동 2575-3일원	296	-	296	경자청고제33호 (13.7.2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985	-	20,985	-	
기정	1	열공급 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0,985	-	20,985	지고제230호 (08.12.31)	

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51	-	4,151	-	
기정	1	전기 공급 설비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4,151	-	4,151	지고제230호 (08.12.31)	

3)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0	-	120	-	
기정	1	가스공급 설비	강서구 명지동 1992-6일원	60	-	60	경자청고 제33호 (13.7.24)	
기정	2	가스공급 설비	강서구 명지동 1623-9일원	60	-	60	경자청고 제33호 (13.7.24)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818	증)36,364	62,182	-	
기정	1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9,983	-	9,983	지고제230호 (08.12.31)	강서경찰서 (존치)
기정	2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7,332	-	7,332	지고제230호 (08.12.31)	주민센터 및 119안전센터
기정	3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243-5일원	3,594	-	3,594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332	-	332	경자청고 제33호 (13.7.24)	파출소 (해양경찰서)
기정	5	공공청사	우체국	강서구 명지동 2865-2일원	4,577	-	4,577	경자청고 제33호 (13.7.24)	우체국
신설	6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1863-3일원	-	증)18,182	18,182	-	서부지청
신설	7	공공청사	-	강서구 명지동 2262일원	-	증)18,182	18,182	-	서부지원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명지동 1863-3일원 - 면적 : 18,182㎡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변경
7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명지동 2262일원 - 면적 : 18,182㎡	•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변경

2) 학교

■ 학교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합 계	11	149,491	
초등학교	5	66,999	
중학교	3	41,893	
고등학교	3	40,599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9,491	-	149,491	-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1790-22일원	13,278	-	13,27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2	학교	초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2370일원	13,277	-	13,277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3	학교	초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1187-1일원	13,306	-	13,306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1015-1	13,338	-	13,338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5	학교	초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2517-1일원	13,800	-	13,800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6	학교	고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15,779	-	15,779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8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2443일원	13,761	-	13,761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9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1229-9일원	14,373	-	14,373	지고제230호 (08.12.31)	
기정	10	학교	중학교	강서구 명지동 2011일원	13,759	-	13,759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11	학교	고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15,780	-	15,780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가	학교	고등 학교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9,040 (26,399)	-	9,040 (26,399)	85.08.21 (부고1995-245)	

※( )는 구역 외 시설면적 포함임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유수 시설	강서구 명지동 2442-3일원	4,143	-	4,143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2370일원	18,862	-	18,862	경자청고제33호 (13.7.24)	
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1279-8일원	4,174	-	4,174	경자청고제33호 (13.7.24)	
변경	4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1582-1일원	68,481	감)24,591	43,890	경자청고제33호 (13.7.24)	근린공원4 중복결정
신설	5	유수지	저류 시설	강서구 명지동 2617-3일원	-	증)26,810	26,810		근린공원5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유수지	• 면적 변경 - 68,481㎡ → 43,890㎡	•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유수지 선형 변경 및 시설분리
5	유수지	• 유수지 신설 - 면적 : 26,810㎡	• 유수지4 시설분리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신규 결정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강서구 명지동 2891일원	2,800	-	2,800	경자청고제33호 (13.7.24)	-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별첨 1-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75,722	
H	소 계		-	-	43,400	
H1	-	9,750	1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9,750	블록형단독주택 (외국인 임대주택)
H2	-	9,177	1	강서구 명지동 1598일원	9,177	
H3	-	3,289	1	강서구 명지동 1601-3일원	3,289	
H4	-	9,496	1	강서구 명지동 1603-2일원	9,496	
H7	-	5,014	1	강서구 명지동 292일원	5,014	
H8	-	4,053	1	강서구 명지동 285-4일원	4,053	
H9	-	2,621	1	강서구 명지동 1014-4일원	2,621	
D	소 계		-	-	132,322	
D-1	①	2,184	1	강서구 명지동 2009-22일원	252	
			2	강서구 명지동 2009-15일원	275	
			3	강서구 명지동 2009-15일원	276	
			4	강서구 명지동 2009-15일원	277	
			5	강서구 명지동 2009-15일원	278	
			6	강서구 명지동 2009-13일원	279	
			7	강서구 명지동 2009-13일원	280	
			8	강서구 명지동 2009-14일원	267	
	②	2,399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4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5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6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7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8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63	
			9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92	
	③	2,198	1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76	
			2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74	
			3	강서구 명지동 2009-9일원	274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1	③	2,198	4	강서구 명지동 2015-1일원	274	
			5	강서구 명지동 2018-1일원	274	
			6	강서구 명지동 2018-2일원	274	
			7	강서구 명지동 2018-2일원	274	
			8	강서구 명지동 2026일원	278	
	④	2,443	1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246	
			2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44	
			3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44	
			4	강서구 명지동 2029-4일원	244	
			5	강서구 명지동 2029-4일원	246	
			6	강서구 명지동 2029-2일원	246	
			7	강서구 명지동 2029-2일원	244	
			8	강서구 명지동 2015-2일원	244	
			9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44	
			10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41	
	⑤	3,090	1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63	
			2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3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4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5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6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2057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57	
			9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10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11	강서구 명지동 2014일원	257	
			12	강서구 명지동 2013일원	259	
	⑥	664	1	강서구 명지동 2029-3일원	339	
			2	강서구 명지동 2029-4일원	325	
	⑦	2,907	1	강서구 명지동 2013일원	288	
			2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86	
			3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86	
			4	강서구 명지동 2074일원	286	
			5	강서구 명지동 2059일원	286	
			6	강서구 명지동 2061일원	285	
			7	강서구 명지동 2052일원	510	
			8	강서구 명지동 2057일원	340	
			9	강서구 명지동 2056일원	340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2	①	2,350	1	강서구 명지동 2580-4일원	237	
			2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34	
			3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34	
			4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34	
			5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37	
			6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35	
			7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234	
			8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34	
			9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234	
			10	강서구 명지동 2580-3일원	237	
	②	2,554	1	강서구 명지동 2580-3일원	258	
			2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54	
			3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52	
			4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55	
			5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258	
			6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2577-3일원	255	
			8	강서구 명지동 2577-2일원	252	
			9	강서구 명지동 2577-2일원	254	
			10	강서구 명지동 2580-1일원	258	
	③	2,426	1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245	
			2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241	
			3	강서구 명지동 2592일원	241	
			4	강서구 명지동 2593일원	241	
			5	강서구 명지동 2593일원	245	
			6	강서구 명지동 2593일원	245	
			7	강서구명지동2593일원	241	
			8	강서구명지동2592일원	241	
			9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41	
			10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45	
	④	2,650	1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8	
			2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3	
			3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3	
			4	강서구 명지동 2595일원	263	
			5	강서구 명지동 2597-1일원	268	
			6	강서구 명지동 2596-1일원	268	
			7	강서구 명지동 2595일원	263	
			8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3	
			9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3	
			10	강서구 명지동 2591일원	268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2	⑤	2,201	1	강서구 명지동 2573-1일원	324	
			2	강서구 명지동 2573-1일원	330	
			3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330	
			4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276	
			5	강서구 명지동 2576-3일원	370	
			6	강서구 명지동 2573-4일원	285	
			7	강서구 명지동 2573-1일원	286	
	⑥	1,707	1	강서구 명지동 2574-4일원	252	
			2	강서구 명지동 2574-4일원	267	
			3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290	
			4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313	
			5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304	
			6	강서구 명지동 2574-4일원	281	
	⑦	1,456	1	강서구 명지동 2598-1일원	231	
			2	강서구 명지동 2598-5일원	221	
			3	강서구 명지동 2575-1일원	233	
			4	강서구 명지동 2575-2일원	255	
			5	강서구 명지동 2575-1일원	251	
			6	강서구 명지동 2597-1일원	265	
	⑧	2,210	1	강서구 명지동 2616일원	279	
			2	강서구 명지동 2565일원	277	
			3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270	
			4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2566일원	259	
			6	강서구 명지동 2565일원	266	
			7	강서구 명지동 2565일원	285	
			8	강서구 명지동 2604-3일원	310	
	⑨	2,312	1	강서구 명지동 2597-1일원	266	
			2	강서구 명지동 2599일원	279	
			3	강서구 명지동 2599일원	279	
			4	강서구 명지동 2600-2일원	285	
			5	강서구 명지동 2616일원	304	
			6	강서구 명지동 2600-2일원	298	
			7	강서구 명지동 2600-2일원	301	
			8	강서구 명지동 2600-2일원	300	
D-3	①	2,412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2	
			7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8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9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10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1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3	②	3,116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8	
			8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9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10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61	
			1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1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6	
	③	3,116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4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5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61	
	③	3,116	6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58	
			8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61	
			9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61	
			10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1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61	
			1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56	
	④	2,412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41	
			2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41	
			3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1	
			4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41	
			5	강서구 명지동 1229-3일원	242	
			6	강서구 명지동 1229-5일원	242	
			7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41	
			8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1	
			9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41	
			10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41	
	⑤	1,796	1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96	
			2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305	
			3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309	
			4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282	
			5	강서구 명지동 1227-4일원	305	
			6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299	
	⑥	1,779	1	강서구 명지동 1229-13일원	289	
			2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95	
			3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324	
			4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87	
			5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95	
			6	강서구 명지동 1229-14일원	289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3	⑦	1,277	1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3	
			2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3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4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59	
			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247	
	⑧	1,198	1	강서구 명지동 1229-10일원	293	
			2	강서구 명지동 1229-12일원	306	
			3	강서구 명지동 1229-6일원	306	
			4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293	
	⑨	2,061	1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301	
			2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306	
			3	강서구 명지동 1235일원	313	
			4	강서구 명지동 1233일원	312	
			5	강서구 명지동 1229-7일원	277	
			6	강서구 명지동 1229-8일원	270	
			7	강서구 명지동 1232일원	282	
D-4	①	1,960	1	강서구 명지동 1338-17일원	319	
			2	강서구 명지동 1332일원	270	
			3	강서구 명지동 1332일원	270	
			4	강서구 명지동 1332일원	270	
			5	강서구 명지동 1332일원	270	
			6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270	
			7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291	
	②	1,069	1	강서구 명지동 1333일원	392	
			2	강서구 명지동 1333일원	302	
			3	강서구 명지동 1333일원	375	
	③	1,282	1	강서구 명지동 1332일원	213	
			2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215	
			3	강서구 명지동 1318-4일원	213	
			4	강서구 명지동 1318-4일원	213	
			5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215	
			6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213	
	④	1,430	1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238	
			2	강서구 명지동 1318-5일원	239	
			3	강서구 명지동 1328일원	238	
			4	강서구 명지동 1328일원	238	
			5	강서구 명지동 1328일원	239	
			6	강서구 명지동 1328일원	238	
	⑤	1,544	1	강서구 명지동 1318-2일원	243	
			2	강서구 명지동 1318-2일원	280	
			3	강서구 명지동 1318-3일원	277	
			4	강서구 명지동 1318-6일원	252	
			5	강서구 명지동 1318-4일원	252	
			6	강서구 명지동 1318-4일원	240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4	⑥	1,145	1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86	
			2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313	
			3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73	
			4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73	
	⑦	2,001	1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323	
			2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82	
			3	강서구 명지동 1326-1일원	282	
			4	강서구 명지동 1326-1일원	276	
			5	강서구 명지동 1326-1일원	276	
			6	강서구 명지동 1326-1일원	282	
			7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280	
	⑧	1,576	1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361	
			2	강서구 명지동 1319일원	318	
			3	강서구 명지동 1320-1일원	304	
			4	강서구 명지동 1320-1일원	304	
			5	강서구 명지동 1320-4일원	289	
	⑨	2,171	1	강서구 명지동 1297-10일원	296	
			2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93	
			3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83	
			4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66	
			5	강서구 명지동 1297-8일원	271	
			6	강서구 명지동 1297-8일원	256	
			7	강서구 명지동 1313일원	256	
			8	강서구 명지동 1314-2일원	250	
	⑩	1,580	1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235	
			2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1311-4일원	269	
			4	강서구 명지동 1311-4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82	
			6	강서구 명지동 1312일원	266	
	⑪	1,615	1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305	
			2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260	
			3	강서구 명지동 1293-12일원	260	
			4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60	
			5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72	
			6	강서구 명지동 1296-3일원	258	
	⑫	1,273	1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64	
			2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311-2일원	254	
			4	강서구 명지동 1308일원	240	
			5	강서구 명지동 1308일원	254	
	⑬	871	1	강서구 명지동 1321-4일원	283	
			2	강서구 명지동 1321-1일원	297	
			3	강서구 명지동 1321-1일원	291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4	⑭	1,562	1	강서구 명지동 1321-4일원	289	
			2	강서구 명지동 1325-2일원	258	
			3	강서구 명지동 1325-3일원	258	
			4	강서구 명지동 1221일원	265	
			5	강서구 명지동 1321-3일원	246	
			6	강서구 명지동 1321-5일원	246	
	⑮	1,932	1	강서구 명지동 1321-6일원	298	
			2	강서구 명지동 1321-7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1321-7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1321-3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1321-3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1225일원	264	
			7	강서구 명지동 1225일원	314	
D-5	①	507	1	강서구 명지동 1058-1일원	252	
			2	강서구 명지동 1043-1일원	255	
	②	1,654	1	강서구 명지동 1078일원	315	
			2	강서구 명지동 1081-1일원	327	
			3	강서구 명지동 1079-20일원	245	
			4	강서구 명지동 1081-1일원	245	
			5	강서구 명지동 1081-1일원	261	
			6	강서구 명지동 1100-7일원	261	
	③	929	1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46	
			2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34	
			3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34	
			4	강서구 명지동 1082-9일원	215	
	④	868	1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21	
			2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16	
			3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16	
			4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15	
	⑤	984	1	강서구 명지동 1082-7일원	246	
			2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46	
			3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46	
			4	강서구 명지동 1082-9일원	246	
	⑥	2,290	1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8	
			2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3	
			3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3	
			4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6	
			5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6	
			6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4	
			7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84	
			8	강서구 명지동 1082-11일원	296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5	⑦	2,028	1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58	
			2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47	
			3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47	
			4	강서구 명지동 1094-2일원	256	
			5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256	
			6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47	
			7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47	
			8	강서구 명지동 1082-15일원	270	
	⑧	597	1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98	
			2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299	
	⑨	648	1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324	
			2	강서구 명지동 1086-6일원	324	
	⑩	633	1	강서구 명지동 1086-5일원	310	
			2	강서구 명지동 1086-4일원	323	
	⑪	1,216	1	강서구 명지동 1086-5일원	304	
			2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304	
			3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304	
			4	강서구 명지동 1086-4일원	304	
	⑫	1,826	1	강서구 명지동 1338-12일원	283	
			2	강서구 명지동 1338-12일원	307	
			3	강서구 명지동 1338-12일원	339	
			4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349	
			5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79	
			6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269	
	⑬	1,801	1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57	
			2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58	
			3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58	
			4	강서구 명지동 1094-4일원	258	
			5	강서구 명지동 1094-9일원	258	
			6	강서구 명지동 1094-9일원	258	
			7	강서구 명지동 1094-10일원	254	
	⑭	1,266	1	강서구 명지동 1094-2일원	246	
			2	강서구 명지동 1094-2일원	258	
			3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258	
			4	강서구 명지동 1094-1일원	258	
			5	강서구 명지동 1086-8일원	246	
	⑮	1,298	1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51	
			2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55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6	①	2,474	1	강서구 명지동 377-1일원	284	
			2	강서구 명지동 377-1일원	266	
			3	강서구 명지동 367-4일원	266	
			4	강서구 명지동 367-4일원	282	
			5	강서구 명지동 368-2일원	344	
			6	강서구 명지동 373-1일원	251	
			7	강서구 명지동 373-1일원	251	
			8	강서구 명지동 369-3일원	251	
			9	강서구 명지동 369-3일원	279	
	②	1,518	1	강서구 명지동 376일원	273	
			2	강서구 명지동 285-1일원	249	
			3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9	
			4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9	
			5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9	
			6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9	
	③	1,831	1	강서구 명지동 282일원	260	
			2	강서구 명지동 282일원	260	
			3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60	
			4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60	
			5	강서구 명지동 278일원	260	
			6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260	
			7	강서구 명지동 279-1일원	271	
	④	2,967	1	강서구 명지동 376일원	241	
			2	강서구 명지동 285-3일원	242	
			3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2	
			4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2	
			5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52	
			6	강서구 명지동 288일원	264	
			7	강서구 명지동 288일원	264	
			8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52	
			9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2	
			10	강서구 명지동 284일원	242	
			11	강서구 명지동 285-3일원	242	
			12	강서구 명지동 375-3일원	242	
	⑤	3,051	1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55	
			2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54	
			3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54	
			4	강서구 명지동 281일원	254	
			5	강서구 명지동 280-1일원	254	
			6	강서구 명지동 280-1일원	254	
			7	강서구 명지동 291-3일원	254	
			8	강서구 명지동 291-3일원	254	
			9	강서구 명지동 291-1일원	254	
			10	강서구 명지동 281일원	254	
			11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54	
			12	강서구 명지동 289일원	256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6	⑥	1,668	1	강서구 명지동 254-3일원	269	
			2	강서구 명지동 254-3일원	276	
			3	강서구 명지동 254-4일원	276	
			4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276	
			5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276	
			6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295	
	⑦	1,642	1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73	
			2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284	
			4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84	
			5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253일원	273	
	⑧	1,480	1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42	
			2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40	
			3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58	
			4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58	
			5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40	
			6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242	
	⑨	2,055	1	강서구 명지동 299-2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299-3일원	257	
			3	강서구 명지동 299-4일원	257	
			4	강서구 명지동 299-5일원	255	
			5	강서구 명지동 299-6일원	261	
			6	강서구 명지동 299-7일원	257	
			7	강서구 명지동 299-8일원	257	
			8	강서구 명지동 299-9일원	255	
D-7	①	1,707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3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4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5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6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7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39	
	②	1,199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32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45	
			3	강서구 명지동 1087-1일원	245	
			4	강서구 명지동 1087-1일원	245	
			5	강서구 명지동 1087-1일원	232	
	③	1,173	1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88	
			2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300	
			3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300	
			4	강서구 명지동 1338-19일원	285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7	④	1,397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8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84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84	
			4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84	
			5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7	
	⑤	1,556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4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5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6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56	
	⑥	2,146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4	강서구 명지동 1091-1일원	268	
			5	강서구 명지동 1091-1일원	268	
			6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7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8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⑦	2,146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4	강서구 명지동 1091-1일원	268	
			5	강서구 명지동 1090일원	268	
			6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7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72	
			8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⑧	1,556	1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56	
			2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3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4	강서구 명지동 1090일원	261	
			5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61	
			6	강서구 명지동 1094-5일원	256	
	⑨	2,112	1	강서구 명지동 1087-2일원	264	
			2	강서구 명지동 1338-18일원	264	
			3	강서구 명지동 1338-18일원	264	
			4	강서구 명지동 1338-18일원	264	
			5	강서구 명지동 1331-1일원	264	
			6	강서구 명지동 1331-1일원	264	
			7	강서구 명지동 1331-2일원	264	
			8	강서구 명지동 1087-2일원	264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D-7	⑩	2,170	1	강서구 명지동 1087-2일원	272	
			2	강서구 명지동 1331-2일원	272	
			3	강서구 명지동 1331-1일원	272	
			4	강서구 명지동 1089-1일원	272	
			5	강서구 명지동 1089-2일원	269	
			6	강서구 명지동 1089-2일원	272	
			7	강서구 명지동 1089-4일원	272	
			8	강서구 명지동 1089-4일원	269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은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규모 이상이어야 함)

※ 필지합병 불허(단, 연접한 2개필지 및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 보행자도로가 사이에 있는 필지간의 합병은 불허)

※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2) 공동주택 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721,009	721,009	
A1	A1	A1	A1	강서구 명지동 1099-9일원	60,579	60,579	
A2	A2	A2	A2	강서구 명지동 1183-2일원	37,031	37,031	
A3	C1	A3	C1	강서구 명지동 1957-9일원	39,218	39,218	
B1	B1	B1	B1	강서구 명지동 1817일원	58,261	58,261	
B2	B2	B2	B2	강서구 명지동 1649-2일원	51,081	51,081	
B3	B3	B3	B3	강서구 명지동 1187-11일원	38,964	38,964	
B4	B4	B4	B4	강서구 명지동 2488일원	33,994	33,994	
B5	B5	B5	B5	강서구 명지동 1692-1일원	40,394	40,394	
B6	B6	B6	B6	강서구 명지동 1155일원	33,005	33,005	
B7	B7	B7	B7	강서구 명지동 1131-1일원	31,660	31,660	
B8	B8	B8	B8	강서구 명지동 1003일원	48,122	48,122	
B9	B9	B9	B9	강서구 명지동 2450일원	37,914	37,914	
B10	B10	B10	B10	강서구 명지동 2541-1일원	41,849	41,849	
C1	A3	C1	A3	강서구 명지동 2404-1일원	39,529	39,529	
C2	C2	C2	C2	강서구 명지동 2371-6일원	85,766	85,766	
E2	E2	E2	E2	강서구 명지동 241-16일원	5,682	5,682	
E3	E3	E3	E3	강서구 명지동 1435-16일원	18,690	18,690	
E4	E4	E4	E4	강서구 명지동 1020-1일원	6,292	6,292	
E5	E5	E5	E5	강서구 명지동 1793-1일원	12,978	12,978	

※ 대지분할선 이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49,146	
근생1	999	1	강서구 명지동 2494-3일원	335	
		2	강서구 명지동 2505-3일원	332	
		3	강서구 명지동 2505-3일원	332	
근생2	1,002	1	강서구 명지동 2506일원	332	
		2	강서구 명지동 2508일원	332	
		3	강서구 명지동 2509-3일원	338	
근생7	6,723	1	강서구 명지동 2586-2일원	874	
		2	강서구 명지동 2586-2일원	925	
		3	강서구 명지동 2586-2일원	930	
		4	강서구 명지동 2587-1일원	994	
		5	강서구 명지동 2587-1일원	1,000	
		6	강서구 명지동 2589일원	1,000	
		7	강서구 명지동 2589일원	1,000	
근생8	7,005	1	강서구 명지동 1631-1일원	991	
		2	강서구 명지동 1631-1일원	928	
		3	강서구 명지동 1631-1일원	991	
		4	강서구 명지동 1594-1일원	1,000	
		5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00	
		6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00	
		7	강서구 명지동 1593-7일원	1,095	
근생9	1,319	1	강서구 명지동 1196-5일원	417	
		2	강서구 명지동 1193일원	425	
		3	강서구 명지동 1191일원	477	
근생10	1,995	1	강서구 명지동 1196-5일원	456	
		2	강서구 명지동 1200-4일원	490	
		3	강서구 명지동 1200-4일원	494	
		4	강서구 명지동 1201일원	555	
근생11	1,681	1	강서구 명지동 1129-2일원	575	
		2	강서구 명지동 1129-2일원	572	
		3	강서구 명지동 1129-2일원	534	
근생12	1,627	1	강서구 명지동 1127-3일원	496	
		2	강서구 명지동 1127-3일원	548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근생12	1,627	3	강서구 명지동 1127-3일원	583	
근생13	2,041	1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409	
		2	강서구 명지동 1198-2일원	408	
		3	강서구 명지동 1200-1일원	408	
		4	강서구 명지동 1200-1일원	408	
		5	강서구 명지동 1204-1일원	408	
근생14	1,892	1	강서구 명지동 1203일원	475	
		2	강서구 명지동 1203일원	475	
		3	강서구 명지동 1210일원	475	
		4	강서구 명지동 1213일원	467	
근생17	2,229	1	강서구 명지동 257-2일원	498	
		2	강서구 명지동 257-1일원	527	
		3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569	
		4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600	
근생18	1,614	1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489	
		2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540	
		3	강서구 명지동 299-1일원	537	
근생19	2,108	1	강서구 명지동 1093-4일원	378	
		2	강서구 명지동 1093-1일원	403	
		3	강서구 명지동 1093-1일원	410	
		4	강서구 명지동 1112-3일원	456	
		5	강서구 명지동 1112-3일원	461	
근생20	1,810	1	강서구 명지동 1112-3일원	456	
		2	강서구 명지동 1089-6일원	456	
		3	강서구 명지동 1089-6일원	456	
		4	강서구 명지동 1089-6일원	442	
근생21	1,382	1	강서구 명지동 1089-6일원	462	
		2	강서구 명지동 1120-1일원	462	
		3	강서구 명지동 1196-3일원	458	
근생22	1,132	1	강서구 명지동 1218일원	552	
		2	강서구 명지동 1227-3일원	580	
근생23	1,354	1	강서구 명지동 1188일원	468	
		2	강서구 명지동 1186-11일원	440	
		3	강서구 명지동 1186-11일원	446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근생24	2,242	1	강서구 명지동 2584-4일원	426	
		2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458	
		3	강서구 명지동 2579일원	458	
		4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458	
		5	강서구 명지동 2578일원	442	
근생25	2,441	1	강서구 명지동 2571일원	468	
		2	강서구 명지동 2568-1일원	483	
		3	강서구 명지동 2568-1일원	483	
		4	강서구 명지동 2567-3일원	492	
		5	강서구 명지동 2567-3일원	515	
근생26	3,151	1	강서구 명지동 1798-1일원	582	
		2	강서구 명지동 1798-1일원	608	
		3	강서구 명지동 1799일원	625	
		4	강서구 명지동 1799일원	668	
		5	강서구 명지동 1739일원	668	
근생27	3,482	1	강서구 명지동 1792-5일원	747	
		2	강서구 명지동 1792-5일원	726	
		3	강서구 명지동 1792-4일원	680	
		4	강서구 명지동 1792-3일원	680	
		5	강서구 명지동 1793-10일원	649	

※ 필지분할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은 허용. 단, 분할된 필지규모는 합병전 규모 이상이어야 함)

※ 필지합병 불허(단, 연접한 3개필지 합병후 2개 필지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만 허용. 보행자도로가 사이에 있는 필지간의 합병은 불허)

※ 필지합병의 경우에도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4) 복합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332,067	287,696	
복합1	복합1	복합1	복합1	강서구 명지동 1981일원	강서구 명지동 1981일원	35,986	35,986	특별계획구역
복합2	복합2	복합2	복합2	강서구 명지동 2003일원	강서구 명지동 2003일원	57,490	57,490	특별계획구역
복합3	복합3	복합3	복합3	강서구 명지동 2156-6일원	강서구 명지동 2156-6일원	62,548	62,548	특별계획구역
복합4	복합4	복합4	복합4	강서구 명지동 1862일원	강서구 명지동 1866-10일원	78,300	16,628	특별계획구역
복합5	복합5	복합5	복합5	강서구 명지동 2288일원	강서구 명지동 2288일원	97,743	97,743	특별계획구역
-	복합6	-	복합6	-	강서구 명지동 1854-2일원	-	17,301	특별계획구역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90,001	
상1	5,426	1	강서구 명지동 2030-1일원	2,770	
		2	강서구 명지동 2051일원	2,656	
상2	5,377	1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572	
		2	강서구 명지동 2033-4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033-4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29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33일원	529	
		6	강서구 명지동 2939일원	529	
		7	강서구 명지동 2926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26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033-3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033-3일원	573	
상3	5,245	1	강서구 명지동 2033-2일원	574	
		2	강서구 명지동 2034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21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19-3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19-2일원	529	
		6	강서구 명지동 2918일원	529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3	5,245	7	강서구 명지동 2919-1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19-1일원	527	
		9	강서구 명지동 2036일원	473	
		10	강서구 명지동 2041일원	497	
상4	5,499	1	강서구 명지동 2950-1일원	529	
		2	강서구 명지동 2950-1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656	
		6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611	
		7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8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950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949일원	529	
상5	5,196	1	강서구 명지동 2946일원	529	
		2	강서구 명지동 2952-1일원	529	
		3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4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29	
		5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537	
		6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455	
		7	강서구 명지동 2952-5일원	501	
		8	강서구 명지동 2955-4일원	529	
		9	강서구 명지동 2955-2일원	529	
		10	강서구 명지동 2954일원	529	
상6	1,964	1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637	
		2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717	
		3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610	
상7	5,719	1	강서구 명지동 2085-1일원	2,799	
		2	강서구 명지동 2084일원	2,920	
상8	14,804	1	강서구 명지동 2088일원	5,697	
		2	강서구 명지동 2906일원	9,107	
상9	4,821	1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2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3	강서구 명지동 2913일원	804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9	4,821	4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4	
		5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4	
		6	강서구 명지동 2085-6일원	803	
상10	1,898	1	강서구 명지동 2090-2일원	950	
		2	강서구 명지동 2090-4일원	948	
상11	4,258	1	강서구 명지동 2916일원	751	
		2	강서구 명지동 2915-2일원	881	
		3	강서구 명지동 2914일원	881	
		4	강서구 명지동 2914일원	881	
		5	강서구 명지동 2911일원	864	
상12	1,091	1	강서구 명지동 2907일원	1,091	
상13	4,276	1	강서구 명지동 2956-2일원	752	
		2	강서구 명지동 2959-3일원	886	
		3	강서구 명지동 2959-2일원	885	
		4	강서구 명지동 2909일원	885	
		5	강서구 명지동 2909일원	868	
상14	1,088	1	강서구 명지동 2897일원	1,088	
상15	7,231	1	강서구 명지동 2959-5일원	640	
		2	강서구 명지동 2959-5일원	768	
		3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8	
		4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8	
		5	강서구 명지동 2896일원	768	
		6	강서구 명지동 2895-1일원	718	
		7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18	
		8	강서구 명지동 2959-4일원	767	
		9	강서구 명지동 2959-6일원	728	
		10	강서구 명지동 2959-6일원	588	
상16	3,006	1	강서구 명지동 2896일원	752	
		2	강서구 명지동 2897일원	752	
		3	강서구 명지동 2902-6일원	751	
		4	강서구 명지동 2902-6일원	751	
상17	7,762	1	강서구 명지동 2902-5일원	7,762	
상18	4,804	1	강서구 명지동 2961일원	1,558	
		2	강서구 명지동 2960일원	1,655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18	4,804	3	강서구 명지동 2960일원	1,591	
상19	1,627	1	강서구 명지동 2894-1일원	1,627	
상20	2,730	1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3	
		2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2	
		3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2	
		4	강서구 명지동 2240일원	683	
상21	2,703	1	강서구 명지동 2894-2일원	682	
		2	강서구 명지동 2894-2일원	669	
		3	강서구 명지동 2893-8일원	670	
		4	강서구 명지동 2893-8일원	682	
상22	1,939	1	강서구 명지동 2893-10일원	1,939	
상23	13,181	1	강서구 명지동 2883-4일원	5,178	
		2	강서구 명지동 2893-6일원	5,040	
		3	강서구 명지동 2965-1일원	2,963	
상24	5,558	1	강서구 명지동 2103-1일원	2,879	
		2	강서구 명지동 2104일원	2,679	
상25	3,292	1	강서구 명지동 2905-1일원	3,292	
상26	5,481	1	강서구 명지동 2109-1일원	2,841	
		2	강서구 명지동 2875일원	2,640	
상27	5,465	1	강서구 명지동 2873-3일원	2,640	
		2	강서구 명지동 2874-1일원	2,825	
상28	4,610	1	강서구 명지동 2239-3일원	2,293	
		2	강서구 명지동 2239-3일원	2,317	
상29	4,497	1	강서구 명지동 2850일원	2,261	
		2	강서구 명지동 2849일원	2,236	
상30	4,662	1	강서구 명지동 2848-3일원	2,277	
		2	강서구 명지동 2843일원	2,385	
상31	17,047	1	강서구 명지동 2793-1일원	17,047	
상32	7,457	1	강서구 명지동 1718일원	978	
		2	강서구 명지동 1718일원	1,043	
		3	강서구 명지동 1683일원	1,116	
		4	강서구 명지동 1683-2일원	1,120	
		5	강서구 명지동 1651-93일원	1,064	
		6	강서구 명지동 1675-1일원	1,036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상32	7,457	7	강서구 명지동 1674-2일원	1,100	
상33	5,747	1	강서구 명지동 1724-1일원	1,099	
		2	강서구 명지동 1723-1일원	1,110	
		3	강서구 명지동 1681-1일원	1,159	
		4	강서구 명지동 1680-7일원	1,200	
		5	강서구 명지동 1678-2일원	1,179	
상34	7,210	1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1,091	
		2	강서구 명지동 1639-2일원	1,047	
		3	강서구 명지동 1637-1일원	1,036	
		4	강서구 명지동 1638-1일원	1,094	
		5	강서구 명지동 1640일원	1,052	
		6	강서구 명지동 1642일원	1,036	
		7	강서구 명지동 1642일원	854	
상35	7,330	1	강서구 명지동 1672-2일원	973	
		2	강서구 명지동 1672-4일원	1,036	
		3	강서구 명지동 1671-5일원	1,055	
		4	강서구 명지동 1670-3일원	1,091	
		5	강서구 명지동 1637-6일원	1,036	
		6	강서구 명지동 1636-2일원	1,049	
		7	강서구 명지동 1635-5일원	1,090	

※ 필지분할 불허(단,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분할 및 필지분할계획에 의한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 필지합병은 연접한 2개필지 내에서만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에 의한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2) 업무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98,333	
업1	45,594	1	강서구 명지동 2903-2일원	11,410	
		2	강서구 명지동 2878일원	11,678	
		3	강서구 명지동 2881일원	11,308	
		4	강서구 명지동 2883-1일원	11,198	
업2	44,592	1	강서구명지동2883-5일원	10,727	
		2	강서구명지동2883-9일원	11,265	
		3	강서구명지동2979일원	11,576	
		4	강서구명지동2980-2일원	11,024	
업3	4,662	1	강서구 명지동 2851-2일원	4,662	
업4	10,366	1	강서구 명지동 2855일원	5,056	
		2	강서구 명지동 2854일원	5,310	
업5	36,941	1	강서구명지동2862-3일원	5,341	
		2	강서구명지동2862-1일원	6,363	
		3	강서구명지동2860-1일원	6,938	
		4	강서구명지동2982-2일원	6,332	
		5	강서구명지동2861-3일원	6,205	
		6	강서구명지동2981일원	5,762	
업6	40,956	1	강서구 명지동 2814-2일원	10,466	
		2	강서구 명지동 2810일원	8,852	
		3	강서구 명지동 2805일원	5,778	
		4	강서구 명지동 2819-1일원	6,958	
		5	강서구 명지동 2821일원	8,902	
업7	11,144	1	강서구 명지동 1878일원	11,144	
업8	4,078	1	강서구명지동607-641일원	1,398	
		2	강서구명지동607-641일원	1,356	
		3	강서구명지동607-641일원	1,324	

※ 필지분할 불허
※ 가구내 필지합병 허용(단, 필지합병계획을 작성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병 가능)
※ 필지합병의 경우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지침도 내용 준수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28,413	
주1	주1	강서구 명지동 2012일원	670	
주2	주2	강서구 명지동 2024-2일원	1,658	
주3	주3	강서구 명지동 2039일원	2,505	
주4	주4	강서구 명지동 2962일원	3,233	
주6	주6	강서구 명지동 2851-2일원	4,465	
주8	주8	강서구 명지동 2509-1일원	452	
주9	주9	강서구 명지동 2562-1일원	1,643	
주11	주11	강서구 명지동 1677-2일원	1,818	
주12	주12	강서구 명지동 1668일원	1,818	
주13	주13	강서구 명지동 1597일원	942	
주14	주14	강서구 명지동 1623-3일원	1,025	
주15	주15	강서구 명지동 1229-4일원	707	
주16	주16	강서구 명지동 1229-2일원	707	
주17	주17	강서구 명지동 1321-4일원	670	
주18	주18	강서구 명지동 1204-1일원	430	
주19	주19	강서구 명지동 1086-8일원	566	
주20	주20	강서구 명지동 1021-3일원	1,456	
주21	주21	강서구 명지동 240-2일원	949	
주22	주22	강서구 명지동 280-2일원	795	
주23	주23	강서구 명지동 375-2일원	722	
주24	주24	강서구 명지동 1093-1일원	591	
주25	주25	강서구 명지동 1090일원	591	

2) 공공청사(변경)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25,818	62,182	
공1	공1	공1	공1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강서구 명지동 607-5일원	9,983	9,983	
공2	공2	공2	공2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강서구 명지동 977-12일원	7,332	7,332	
공3	공3	공3	공3	강서구 명지동 243-5일원	강서구 명지동 243-5일원	3,594	3,594	
공4	공4	공4	공4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강서구 명지동 2033-1일원	332	332	
공5	공5	공5	공5	강서구 명지동 2865-2일원	강서구 명지동 2865-2일원	4,577	4,577	
-	공6	-	공6	-	강서구 명지동 1863-3일원	-	18,182	
-	공7	-	공7	-	강서구 명지동 2262일원	-	18,182	

3) 교육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53,817	
유1	유1	강서구 명지동 252일원	720	
유2	유2	강서구 명지동 1338-15일원	1,162	
유3	유3	강서구 명지동 1623-3일원	1,218	
유4	유4	강서구 명지동 2544-3일원	1,226	
초1	초1	강서구 명지동 1015-1일원	13,338	
초2	초2	강서구 명지동 1187-1일원	13,306	
초3	초3	강서구 명지동 2517-1일원	13,800	
초4	초4	강서구 명지동 2370일원	13,277	
초5	초5	강서구 명지동 1790-22일원	13,278	
중1	중1	강서구 명지동 1229-9일원	14,373	
중2	중2	강서구 명지동 2443일원	13,761	
중3	중3	강서구 명지동 2011일원	13,759	
고1	고1	강서구 명지동 1604일원	15,779	
고2	고2	강서구 명지동 2009-6일원	15,780	
고3	고3	강서구 명지동 299일원	9,040	

4) 열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20,985	
열1	열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20,985	

5) 전기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4,151	
전1	전1	강서구 명지동 607-641일원	4,151	

6) 가스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20	
가1	가1	강서구 명지동 1992-6일원	60	
가2	가2	강서구 명지동 1623-9일원	60	

7) 종교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3,781	
종1	종1	강서구 명지동 2546일원	1,283	
종2	종2	강서구 명지동 1278-11일원	928	
종4	종4	강서구 명지동 241-5일원	1,570	

8) 연구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01,958	
연1	연1	강서구 명지동 2829-2일원	58,005	
연2	연2	강서구 명지동 2776-8일원	43,953	

9) 편익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1,730	
편3	편3	강서구 명지동 2509-1일원	1,549	
편4	편4	강서구 명지동 1623-4일원	2,117	
편6	편6	강서구 명지동 618-50일원	4,716	
편7	편7	강서구 명지동 241-8일원	3,348	

10) 주유소(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7,696	
주유1	주유1	강서구 명지동 978일원	1,627	
주유2	주유2	강서구 명지동 2827-5일원	2,063	
주유4	주유4	강서구 명지동 1635-6일원	1,698	
주유7	주유7	강서구 명지동 2113-2일원	2,308	

11) 의료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25,708	
의1	의1	강서구 명지동 2003일원	54,019	특별계획구역
의2	의2	강서구 명지동 2160일원	64,395	
의3	의3	강서구 명지동 608-1214일원	7,294	

12) 배수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1,308	
배1	배1	강서구 명지동 1008-11일원	1,308	

13)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2,800	
오1	오1	강서구 명지동2891일원	2,800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별첨1-라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주택건설용지

1) 일반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필지형 단독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	D1~D7	용도	허용	• 단독주택(필지당 3가구에 이하에 한함)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지하층은 주거용도 불허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점포주택 -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사용은 1층과 지하층에 한한다.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1.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	H1~H4 H7~H9	용도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타운하우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 단독주택을 말한다. -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녹화시 허용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1~1 : 3이 되도록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2) 공동주택(변경)

■ 연립주택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E2~E5	용도	허용	•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이상의 독립된 주택이 기타 부대시설을 공유하고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연속저층 단독주택을 말한다. - 타운하우스는 3층 이하로서 각 가구를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를 설치하여야한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4호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타운하우스의 경우 담장 높이는 1.0m)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5.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아파트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A1~A3 B1~B10 C1~C2	용도	허용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단,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럭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 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4호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시설)의 외부 노출은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설계에 포함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축물의 지붕은 조형적 디자인으로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방안 인 이격거리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위치 및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변경)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A1	A1	60㎡이하	60㎡이하	60,579	60,579	1,680	1,680	20층이하	20층이하	30%이하	30%이하	220%이하	220%이하	
A2	A2	60㎡이하	60㎡이하	37,031	37,031	1,120	1,120	20층이하	20층이하	30%이하	30%이하	200%이하	200%이하	외국인임대
C1	A3	85㎡초과	60㎡이하	39,529	39,529	610	1,100	20/30층 이하	20/30층 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B1	B1	60~85㎡ 이하	60~85㎡ 이하	58,261	58,261	1,230	1,230	20/25층 이하	20/25층 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B2	B2	60~85㎡ 이하	60~85㎡ 이하	51,081	51,081	980	980	20층이하	20층이하	30%이하	30%이하	200%이하	200%이하	
B3	B3	60~85㎡ 이하	60~85㎡ 이하	38,964	38,964	750	750	20층이하	20층이하	30%이하	30%이하	200%이하	200%이하	
B4	B4	60~85㎡ 이하	60~85㎡ 이하	33,994	33,994	650	650	25층이하	25층이하	25%이하	25%이하	200%이하	200%이하	
B5	B5	60~85㎡ 이하	60~85㎡ 이하	40,394	40,394	850	850	30층이하	30층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B6	B6	60~85㎡ 이하	60~85㎡ 이하	33,005	33,005	700	700	30층이하	30층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B7	B7	60~85㎡ 이하	60~85㎡ 이하	31,660	31,660	670	670	30층이하	30층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B8	B8	60~85㎡ 이하	60~85㎡ 이하	48,122	48,122	920	920	20층이하	20층이하	30%이하	30%이하	200%이하	200%이하	일반임대
B9	B9	60~85㎡ 이하	60~85㎡ 이하	37,914	37,914	730	660	20층이하	20층이하	25%이하	25%이하	180%이하	180%이하	
B10	B10	60~85㎡ 이하	60~85㎡ 이하	41,849	41,849	800	800	20층이하	20층이하	25%이하	25%이하	200%이하	200%이하	
A3	C1	60㎡이하	85㎡초과	39,218	39,218	1,090	610	20/30층 이하	20/30층 이하	25%이하	25%이하	220%이하	220%이하	
C2	C2	85㎡초과	85㎡초과	85,766	85,766	1,210	1,210	20층이하	20층이하	25%이하	25%이하	200%이하	200%이하	
E2	E2	60~85㎡ 이하	60~85㎡ 이하	5,682	5,682	90	90	4층이하	4층이하	50%이하	50%이하	12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E3	E3	60~85㎡ 이하	60~85㎡ 이하	18,690	18,690	280	280	4층이하	4층이하	50%이하	50%이하	12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E4	E4	60~85㎡ 이하	60~85㎡ 이하	6,292	6,292	100	100	4층이하	4층이하	50%이하	50%이하	12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E5	E5	60~85㎡ 이하	60~85㎡ 이하	12,978	12,978	200	200	4층이하	4층이하	50%이하	50%이하	120%이하	120%이하	연립주택 (외국인임대)
복합1	복합1	85㎡초과	85㎡초과	35,986	35,986	1,020	894	30층이하	30층이하	60%이하	60%이하	80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복합2	복합2	85㎡초과	85㎡초과	57,490	57,490	1,620	1,470	30층이하	30층이하	60%이하	60%이하	80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	복합3	-	85㎡초과	-	62,548	-	1,590	-	40층이하	-	60%이하	-	1,000%이하	특별계획구역
복합4	복합4	85㎡초과	85㎡초과	78,300	16,628	2,210	470	30층이하	30층이하	60%이하	60%이하	800%이하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	복합6	-	85㎡초과	-	17,301	-	490	-	30층이하	-	60%이하	-	800%이하	특별계획구역

주1) 승인권자(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 할 수 있다.
주2) 대지분할가능선 반영 블록(A1, C2)은 각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세대수 배분함.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2">SR</td><td rowspan="12">근생1,2
근생7~14
근생17~27</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근린생활시설의 부대시설로 주거 1가구 허용(단, 근생7,8은 제외)</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근생1,2,7~14,
17~25</td><td>250% 이하</td></tr>
<tr><td>근생 26, 27</td><td>18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근생1,2,7~14,
17~25</td><td>5층 이하</td></tr>
<tr><td>근생 26, 27</td><td>3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건축물 외부 :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 대문,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나. 상업•업무용지

1) 상업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상1,7,8,17 상23~30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1	상2~6 상9~16 상18~22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2	상32 ~ 상35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S3	상31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8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일반도로에 면한 변 : 7 ~ 10m 건축한계선 지정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2) 업무시설 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	업1 ~ 업8	용도	허용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		• <별표2>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업1~2	800% 이하
				업3~6	600% 이하
				업7	500% 이하
				업8	180% 이하
			높이	업1~2	30층 이하
				업3~6	20층 이하
				업7	10층 이하
				업8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 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별표2>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분	상업·업무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중심상업	노선상업	기타상업	
도면표시	S1	S2	S3	U
해당가구	상1 ~ 상30	상32 ~ 상35	상31	업1 ~ 업8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제외	○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6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한함
문화 및 집회시설	○	○	○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제외	○ 상점에 한함	○ 대형할인점에 한함	○
운수시설	○	×	×	○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	○	○
교육연구 시설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학원 및 연구소에 한함	×	○
노유자시설	○	○	○	○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	○	○	○
업무시설	○	○	○	○
숙박시설	○	×	×	○
위락시설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 제외)	○	○	×	○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제외)	×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기타시설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허용용도, × : 불허용도

※ 단, 숙박 및 위락시설은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숙박시설은 100m, 위락시설은 50m 이격한다.(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1	주3, 4, 6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2	주11, 12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3	주1, 2, 주15 ~ 20, 주22 ~ 25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4	주8, 9 주13, 14, 21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제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30% 이하로 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2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도(건축물등에 관한 계획) 참조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2) 공공청사(변경)

[기정]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5">G</td><td rowspan="15">공1
~
공5</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9">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4">용적률</td><td>공1,2</td><td>300% 이하</td></tr>
<tr><td>공3</td><td>240% 이하</td></tr>
<tr><td>공4</td><td>180% 이하</td></tr>
<tr><td>공5</td><td>600% 이하</td></tr>
<tr><td rowspan="4">높이</td><td>공1,2</td><td>5층 이하</td></tr>
<tr><td>공3</td><td>4층 이하</td></tr>
<tr><td>공4</td><td>3층 이하</td></tr>
<tr><td>공5</td><td>2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변경]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20">G</td><td rowspan="20">공1
~
공7</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18">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5">용적률</td><td>공1,2</td><td>300% 이하</td></tr>
<tr><td>공3</td><td>240% 이하</td></tr>
<tr><td>공4</td><td>180% 이하</td></tr>
<tr><td>공5</td><td>600% 이하</td></tr>
<tr><td>공6, 7</td><td>800% 이하</td></tr>
<tr><td rowspan="5">높이</td><td>공1,2</td><td>5층 이하</td></tr>
<tr><td>공3</td><td>4층 이하</td></tr>
<tr><td>공4</td><td>3층 이하</td></tr>
<tr><td>공5</td><td>20층 이하</td></tr>
<tr><td>공6, 7</td><td>3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3) 학교(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3">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2">E1
E2
E3
E4</td><td rowspan="12">유1~유4
초1~초5
중1~중3
고1~고3</td><td rowspan="2">용도</td><td colspan="2">허용</td><td>• E1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E2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E3 :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 E4 :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td></tr>
<tr><td colspan="2">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8">규모</td><td colspan="2">건폐율</td><td>50% 이하</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유1~4</td><td>200% 이하</td></tr>
<tr><td>초1~5
중1~2
고1,3</td><td>200% 이하
(단, 국제학교 및 BTL·BTO 사업시 250%이하)</td></tr>
<tr><td>중3
고2</td><td>150% 이하</td></tr>
<tr><td rowspan="3">높이</td><td>유1~4</td><td>4층 이하</td></tr>
<tr><td>초1~5
중1~2
고1,3</td><td>5층 이하</td></tr>
<tr><td>중3
고2</td><td>3층 이하</td></tr>
<tr><td colspan="3">형태 및 외관</td><td>-</td></tr>
<tr><td colspan="3">배치 및 건축선</td><td>-</td></tr>
<tr><td colspan="3">색 채</td><td>•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4) 열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1	열1	용도	허용	• 발전시설 중 열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5) 전기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2	전1	용도	허용	• 발전시설 중 전기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6) 가스공급설비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5	가1	용도	허용	• 가스공급설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7)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W	종1,2,4	용도	허용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부속용도(목회자숙소 등)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종1,2	5층 이하
				종4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8) 연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6	연구1 연구2	용도	허용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교육원 • 부수용도로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6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9) 편익시설(변경없음)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C</td><td rowspan="10">편3,4
편6,7</td><td rowspan="2">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경마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4">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5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 colspan="2">2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편3,4</td><td>5층 이하</td></tr>
<tr><td>편6,7</td><td>4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10) 의료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M	의3	용도	허용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장례식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1) 주유소(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3	주유1,2 주유4 주유7	용도	허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2) 배수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4	배1	용도	허용	• 배수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13)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Q6	오1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배치 및 건축선		-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table>
<tr><th>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td><td>•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이상’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td></tr>
<tr><td>공동주택</td><td>•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및 공동주택 이외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지상주차장은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 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table>
<tr><th>구 분</th><th>보관가능대수</th></tr>
<tr><td>주 동</td><td>주동세대당 0.3대</td></tr>
<tr><td>상 가</td><td>30대</td></tr>
<tr><td>복지관 및 관리소</td><td>15대</td></tr>
<tr><td>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td>10대</td></tr>
</table>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td></tr>
</table>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대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미터이상과 경사구배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상업·업무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용지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 출입 허용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용지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공동주택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지 아니한 블록(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을 사이에 둔 연접한 블록 간)의 경우에도 블록(또는 연접한 블록 간)을 가로지르는 연속된 개방공간(인동거리에 의한 개방공간은 제외)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조경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2.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 : 40% 이상 3.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50% 이상 4.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업무용지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가각부에 지정된 공개공지는 완충녹지(또는 공공공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조경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 보행생태축(녹도 및 실개천 등),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되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내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2.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3.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함 • 대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투수성 포장’ 을 적극 권장한다.
기타시설용지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다. 기타계획(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 rowspan="2">공통</td><td>생태
면적률
적용</td><td>• 생태면적률(권장)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시설별 생태면적률 확보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생태면적률(%)</th></tr>
<tr><td rowspan="2">공동주택지</td><td>연립</td><td>35 이상</td></tr>
<tr><td>아파트</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단독주택지(블록형포함)</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상업·업무시설</td><td>30 이상</td></tr>
<tr><td colspan="2">교육시설(초·중·고등학교)</td><td>50 이상</td></tr>
<tr><td colspan="2">공공건물</td><td>40 이상</td></tr>
<tr><td colspan="2">기타시설</td><td>20 이상</td></tr>
</table>
※ 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td></tr>
<tr><td>유비쿼
터스
관련
사항</td><td>•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td></tr>
</table>

<별표3>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전면 공지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2.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기준 1.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2.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4.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5.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구 분	계획 내용
공공 조경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 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 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안 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 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함.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전면 공지	• ‘전면공지’ 라 함은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함.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하도록 함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함 • ‘전면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경설치가 가능하다. -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함 2.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함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와 경관상세계획에서 별도의 포장계획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공개 공지	•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나 가각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공개공지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진입부의 설치 1.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함 2.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시설기준 1.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2.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4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함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4. 공개공지 면적 50㎡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함 5.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함

구 분	계획 내용
공공 조경	• ‘공공조경’ 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함. 이 때, ‘공공조경’ 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하도록 함 • ‘공공조경 조성 기준 및 방법’ 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함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 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식재는 교목은 1㎡당 0.3본, 관목은 1㎡당 0.5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함.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함
공공 보행 통로	• ‘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안 됨 - 공공보행통로 양 끝부분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함.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 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 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함.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함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의 연결을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5. 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변경)

■ 권역구분

[기정]

구 분	계획 내용
권역구분	• 권역구분

권역별 해당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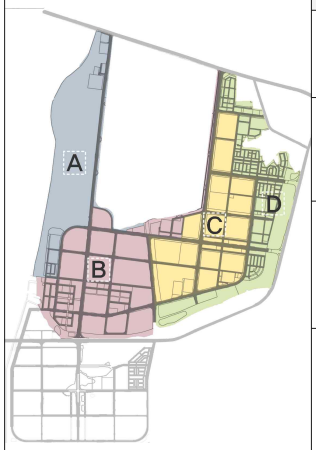

권역	블럭명	주요시설기능	권역이미지
A	경1, 근1, 완1·2, 배1, D-1, 주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주유8, 업8, H-1	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	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
B	경1, 복합1~5, 업1~7, 주유1·2·7, 공2·4·5,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	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
C	소1, A-1~3, E-4, C-1·2, D-7, B-1~10, 근생1·2·19·21·26·27, 완4~7, 초3~5, 중2, 경2, 주8·11·12·24·25, 근2·3, 유4, 편3, 주유4, 연결2·3, 종1, 어3·4·8·9, 상32~35	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D	주9·13~23, H-2~4·7~9, D-2~6, E-2~4, 근생7~14·17·18·22~25, 근4·5, 유1~3, 초1·2, 중1, 고1, 공3, 어5~7, 경2, 광3, 완4~8, 유수2·3, 편4·6·7, 종2·4, 소2, 상31, 연구2, 연결3~4, 가2	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	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

• 색채계획 적용 방안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에서 제시된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이미지 사례를 가급적 적용하도록 한다.
- 색채계획 적용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색채적용시 고려사항는 다음과 같다.

색채의 적용

· 저층부 : 고급스럽고 편안한 저채도의 Dark Brown 계열색 자연친화적 색채 강조

· 중층부 : 보조색과 주조색의 명도차이를 이용하여 매스감 증대 Warm Gray계열을 기본색으로 프레임 및 수직강조부에 강조색 적용

· 상층부 : 원경에서의 다양한 패턴이 인지되도록 상징적 역할 부여

1	2	3	4	5	6
C 41 M 41 Y 58 K 25	C 28 M 32 Y 43 K 11	C 17 M 24 Y 46 K 4	C 10 M 11 Y 16 K 1	C 13 M 8 Y 6 K 1	C 50 M 32 Y 29 K 12

[변경]

구 분	계획 내용

• 권역구분

권역별 해당 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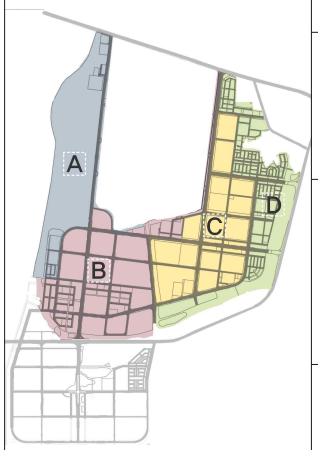

권역	블럭명	주요시설기능	권역이미지
A	경1, 근1, 완1·2, 배1, D-1, 주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주유8, 업8, H-1	친환경 생태공원, 환경처리시설, 블록형 단독주택	Eco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어울림
B	경1, 복합1~6, 업1~7, 주유1·2·7, 공2·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	워터프론트, 복합시설, 중심상업 및 업무시설	Vitality 미래국제도시의 활력
C	소1, A-1~3, E-4, C-1·2, D-7, B-1~10, 근생1·2·19~21·26·27, 완4~7, 초3~5, 중2, 경2, 주8·11·12·24·25, 근2·3, 유4, 편3, 주유4, 연결2·3, 종1, 어3·4·8·9, 상32~35	중고층 주거지, 커뮤니티광장, 생태공원	Amenity 도심 생활속 쾌적함
D	주9·13~23, H-2~4·7~9, D-2~6, E-2~4, 근생7~14·17·18·22~25, 근4·5, 유1~3, 초1·2, 중1, 고1, 공3, 어5~7, 경2, 광3, 완4~8, 유수2·3, 편4·6·7, 종2·4, 소2, 상31, 연구2, 연결3~4, 가2	블록형 단독주거지,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결녹지, 수로	Community 안락한 커뮤니티의 편안함

권역구분

• 색채계획 적용 방안
- 색채계획의 적용은 공동주택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색채계획에서 제시된 색상을 기준으로 배색이미지 사례를 가급적 적용하도록 한다.
- 색채계획 적용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 색채적용시 고려사항는 다음과 같다.

■ 권역별 도시이미지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A	경1, 근1, 완1·2, 배1, D-1, 주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주유8, 업8, H-1	계획 방향	 • 서낙동강하구의 매립지를 중심으로 풍부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 매립지 내 건축물 등 대형구조물의 계획을 지양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함을 감안하여 자연환경 복원개념의 공원을 계획한다. 또한 공원부지 및 유보지의 유수와 자생식물의 식생을 활용하여 양호한 조류생육환경을 조성한다. • 생태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 복원지역과 시가화 지역이 접하는 중간지점은 집단시설에 의한 생태적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활동성 이용시설의 입지를 자제하고, 대중적이면서 제한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열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도시환경시설을 도심과 이격배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호한다. 환경시설은 주요가로변 완충녹지 확보를 통해 시각적 차폐를 유도한다. • 저층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수경관 및 주변 공원의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차분하고 편안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 국도 24호에서 진입하는 가로축은 유보지의 미래개발에 대비하여 충분한 녹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도시진입가로경관을 조성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A</td><td>경1, 근1,
완1·2, 배1,
D-1, 주1, 공1,
열1, 전1, 가1,
고2, 중3, 의3,
주유8, 업8,
H-1</td><td>색채
계획</td><td>

• A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7.5Y, 2.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A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
채
이
미
지</td><td>주조색</td><td>1</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
<tr><td>3</td></tr>
<tr><td>강조색</td><td>4</td></tr>
</table>

A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A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
색
이
미
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B	경1, 복합1~5, 업1~7, 주유1·2·7, 공2·4·5,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	경1, 복합1~6, 업1~7, 주유1·2·7, 공2·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	계획 방향	 • 근거리 내 해상경관과 원경의 산을 향한 조망이 가능한 지역현황 특성에 따라 주변경관을 향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필요하다. 명지지구 자체의 다양한 경관요소 -수변, 도로, 공원·녹지, 수로 등-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통해 신도시의 CBD가 지닐 수 있는 인공적이며 무미건조한 도시환경을 극복하도록 한다. • 명지지구의 CBD는 국제업무의 교류기능과 중심상업기능, 주상복합기능, 종합의료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축물 경관의 수직적/ 수평적인 제어를 통해 조화롭게 계획된 신도시의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한다. • 주변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차폐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는 권역으로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회랑 등) 건축한계선을 통한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남측 명지지구와의 경계부 연결녹지 내 자연친화적인 도심환경을 위한 친수, 친자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도모한다. • 도심부 가로활동을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전용가로의 이벤트성을 부여하고, 국제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성 높은 가로시설을 계획한다. • 보행자 중심의 친근한 공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 (지상으로부터 10m 이하) 부분의 지상부 필로티, 차양, 간판, 가로시설 등의 디자인 가이드를 통한 가로환경의 통일성과 미관성을 증진한다.

<table>
<tr><th rowspan="2">권역</th><th colspan="2">해당블럭</th><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 획 내 용</th></tr>
<tr><th>기정</th><th>변경</th></tr>
<tr><td>B</td><td>경1,
복합1~5,
업1~7,
주유1·2·7,
공2·4·5,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td><td>경1,
복합1~6,
업1~7,
주유1·2·7,
공2·4·5·6·7,
연결1·2·4, 완3,
주2~4·6,
광2,
오1,
유수1,
어1,
연구1,
의1·2,
상1~30</td><td>색채
계획</td><td>

• B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5PB, 5YR ~ 7.5YR
- 명도/채도 (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B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
채
이
미
지</td><td>주조색</td><td>1</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r>
<tr><td>강조색</td><td>4</td><td></td><td></td><td></td></tr>
</table>

B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B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
색
이
미
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C	소1, A-1~3, E-4, C-1·2, D-7, B-1~10, 근생1·2·19~21·26·27, 완4~7, 초3~5, 중2, 경2, 주8·11·12·24·25, 근2·3, 유4, 편3, 주유4, 연결2·3, 종1, 어3·4·8·9, 상32~35	계획 방향	 • 고층형 공동주택단지가 남북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커뮤니티 회랑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이미지를 형성한다. • 내부간선도로와 커뮤니티회랑의 사이에 공동주택단지가 길게 선형의 입면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어 배경의 송학산, 봉화산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단지를 설계할 때 단지 내에서 을숙도 방향 낙동강하구 수변경관과 커뮤니티회랑으로의 개방적인 조망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격자형 도시골격이 돋보이는 형태를 취하며 동서방향의 개방형 시각회랑을 확보한다. • 도시기능을 형성하는 B권역과의 경계부에 선형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남북의 바람길을 형성한다. • 커뮤니티별 공원/광장 등의 조성을 통해 휴식과 녹음을 제공하고 보행동선과 녹지체계를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C</td><td>소1, A-1~3, E-4, C-1·2, D-7, B-1~10, 근생1·2·19~21·26·27, 완4~7, 초3~5, 중2, 경2, 주8·11·12·24·25, 근2·3, 유4, 편3, 주유4, 연결2·3, 종1, 어3·4·8·9, 상32~35</td><td>색채계획</td><td>

• C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7.5R, 2.5YR ~ 7.5YR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C권역 색채계획</th></tr>
<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주조색</td><td>1</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d></td><td></td><td></td></tr>
<tr><td>3</td><td></td><td></td><td></td></tr>
<tr><td>강조색</td><td>4</td><td></td><td></td><td></td></tr>
</table>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C권역 배색예시</th></tr>
<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
<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
</table>

공동주택 배색예시

</td></tr>
</table>

권역	해당블럭	구 분	계 획 내 용
D	주9·13~23, H-2~4·7~9, D-2~6, E-2~4, 근생7~14·17·18·22~25, 근4·5, 유1~3, 초1·2, 중1, 고1, 공3, 어5~7, 경2, 광3, 완4~8, 유수2·3, 편4·6·7, 종2·4, 소2, 상31, 연구2, 연결3~4, 가2	계획 방향	 • 낙동강 하구와 면하는 지역으로 생태녹지와 연접하는 안락한 저층의 주거지역을 계획한다. • 지구 동측과 남북을 에워싼 연결녹지 내 수로경관을 형성하여 하천 주변 공간을 근린 생활 시설물(커뮤니티회랑)과 연계한 친수형 커뮤니티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커뮤니티회랑을 중심으로 명지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권역으로서 보다 친근하고 쾌적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적인 이미지보다는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하여 자연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색채이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다른 권역에 비해 체계화된 색채계획 수립 용이) • 수변경관을 따라서 자연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간접조명을 중심으로 한 차분하고 안정된 야간경관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역으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속성을 갖는 보행 네트워크 형성. 보행 네트워크와 그린 네트워크를 일치시켜 보행자들이 편안하면서도 자연의 이미지가 풍부한 보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table>
<tr><th>권역</th><th>해당블럭</th><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2">D</td><td rowspan="2">주9·13~23,
H-2~4·7~9,
D-2~6, E-2~4,
근생7~14·17·18·22~25,
근4·5, 유1~3,
초1·2, 중1, 고1,
공3, 어5~7, 경2,
광3, 완4~8,
유수2·3,
편4·6·7, 종2·4,
소2, 상31,
연구2, 연결3~4,
가2</td><td>계획
방향</td><td>• 권역 내 보행자 전용가로의 경우 인공소재(콘크리트 등)의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소재(점토포장, 잔디포장, 데크)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단, 유지·관리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자연친화적 소재(나무, 벽돌, 흙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저층의 건축물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는 D권역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주조색과 지붕색은 저채도를 적용하여 돌출감, 압박감이 덜 느껴질 수 있는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td></tr>
<tr><td>색채
계획</td><td>• D권역 건축물의 주조, 강조, 보조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주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9.0 ~ 9.5 / 1.0 ~ 1.5
- 보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 (V/C) : 7.0 ~ 9.0 / 1.5 ~ 3.0
- 강조색 : - 색상 (H) : 10B, 5G
- 명도/채도(V/C) : 6.0 ~ 7.0 / 3.0 ~ 4.0
<table><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D권역 색채예시</th></tr><tr><th colspan="3">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tr><td rowspan="4">색채이미지</td><td rowspan="2">주조색</td><td>1</td><td rowspan="2"></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tr><td rowspan="2">보조색</td><td>2</td></tr><tr><td>3</td><td></td><td></td><td></td></tr><tr><td colspan="2">강조색</td><td>4</td><td></td><td></td><td></td></tr></table>D권역 색채계획 (먼셀 H V/C)

• 색채계획을 바탕으로 한 배색 예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table><tr><th>구분</th><th colspan="3">D권역 배색예시</th></tr><tr><th>색상</th><th>가</th><th>나</th><th>다</th></tr><tr><td>배색이미지</td><td></td><td></td><td></td></tr></table>공동주택 배색예시</td></tr>
</table>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계획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 ” 라 한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에 따른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시설 및 표시제한 -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 · 지하도 ·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 · 석축 · 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의 노면 9) 그밖에 도로 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 -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광고물 등의 표시내용 · 종류 · 색깔 ·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광고물등의 설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 등 -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 · 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규격(KS)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업 ·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등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등의 문자 등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조명연출 방법 -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 (“+”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명을 연출할 경우 휘도(광원의 밝기)는 낮게 유지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유도한다.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3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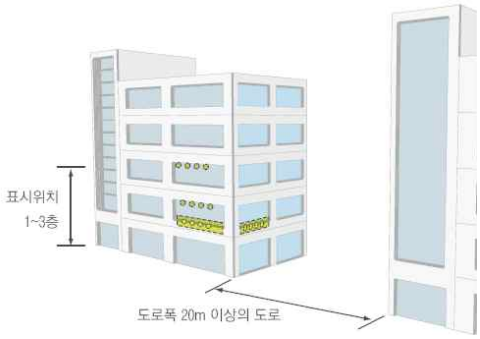 -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표시방식은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형 옥외광고물은 도형이나 그림보다는 문자가 잘 인지되도록 구성하고, 간판의 여백이 단순한 바탕이 아니라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인지되도록 디자인한다. 2)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 당 1면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하다. 3)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가로폭의 80% 이내로 최대 10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단, 6m가 넘을 경우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4) 광고물의 세로크기는 입체형의 경우 50cm이내, 판류형의 경우 벽면의 80% 이내로 표시한다. 5) 광고물의 두께는 건축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제한한다. 가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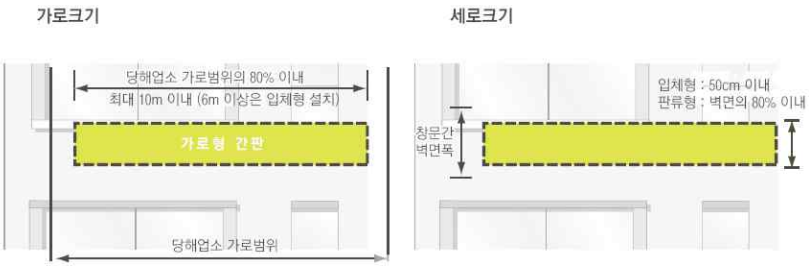 •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축물의 5층이하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부분에는 표시 불가능하다. 단,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에까지 표시한다. - 1줄로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 폭이 20m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가 가능하며 소형 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되 업소 출입구 좌,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한다. 돌출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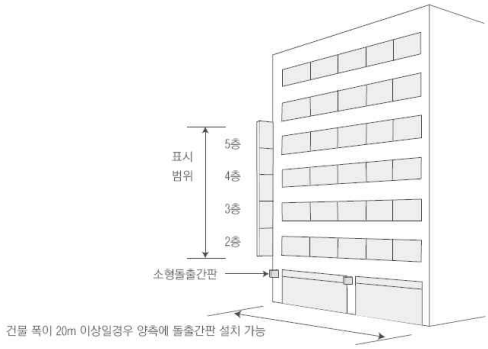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 표기내용의 전체 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고 주 표기내용의 크기는 평균 가로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한다. - 간판의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기하고 보조 표기내용의 경우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한다. 영업내용은 업종명이나 대표취급품목 1종만 표기가능하고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은 표기 불가능하다. 돌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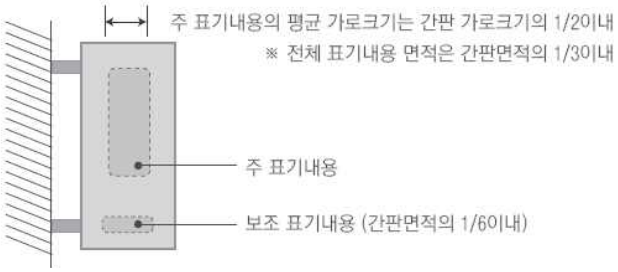 - 소형 돌출간판의 표기면적은 1면 최대 0.36㎡ 이내로 제한하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이내로 표시하며 2개 이상의 설치시 돌출 폭을 일치시킨다. 세로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며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이격하여 두께 30㎝ 이내로 표시한다. 소형돌출형 옥외광고물의 표기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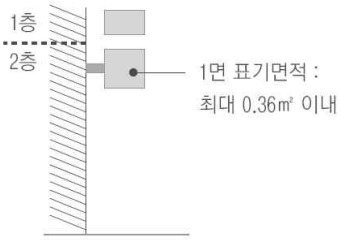 •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다.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업소의 정보 표기는 지양하여 업소의 이미지와 관련된 중요 핵심 요소만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 건물에 전면 공지에 설치되는 경우 가급적 수직적인 형상 유도하고, 입점 업소의 위치를 알리는 문안은 통일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 서체는 크기, 간격 등을 단일 건물 광고물 및 건물 단위로 조화를 유도한다. - 광고물은 당해 건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표시하고 지주이용 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 옥외광고물은 1면 최대 3㎡ 이내로 표시하고, 세로크기는 최대 5m 이내로 표시한다.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설치기준	• 지자체 광고물 관련 조례를 따르되, 신도시에서는 이 지침에 정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업소당 가로형 간판1개설치를 원clr으로 하고 다만,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와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설치가능하다. • 가로형 간판,돌출형 간판,지주이용 간판 등은 각각 세부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 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를 금지한다. • 현수막, 벽보 등 게시 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 게시판은 가로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수를 정하여 설치한다. • 시장 · 군수는 건축허가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첨부된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간이입면도 등 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건축한 후 다시 건축물을 분양 · 임대할 경우 분양 · 임대 계약서 등에 간판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 본 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야간
경관</td><td>가로조명에
관한사항</td><td>

• 가로등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 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

•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5개 간선가로경관축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며, 안개에 대한 투시성이 좋아 가로조명에 적합한 고압나트륨램프를 기본으로 하되, 상업용지, 공원 등과 접한 구간은 중앙분리대 또는 보도측에 메탈핼라이드램프 등 2가지 광원을 혼합하여 독특한 야간경관을 창출한다.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열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
- 구역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table>
<tr><th>구 분</th><th>주 간 선 도 로</th><th>집분산도로</th></tr>
<tr><td>조 도</td><td>30룩스 이상</td><td>20룩스 이상</td></tr>
<tr><td>높 이</td><td>10 - 20m</td><td>5 - 10m</td></tr>
<tr><td>간 격</td><td>30 - 40m</td><td>40 - 50m</td></tr>
<tr><td>등 종</td><td>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td><td>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td></tr>
<tr><td>배치방식</td><td>마주보기식</td><td>어긋나기식</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획 내용</th></tr>
<tr><td>야간
경관</td><td>가로조명에
관한사항</td><td>

• 야간조명의 강화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상업지역내 간선도로와 면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table>
<tr><th>구 분</th><th>대 상 용 지</th></tr>
<tr><td>상업업무용지</td><td>· 상업업무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td></tr>
<tr><td>아파트용지</td><td>· 단지의 입지상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위상의 표현이 필요한 지역</td></tr>
<tr><td>복합용지</td><td>· 복합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td></tr>
</table>
</td></tr>
</table>

6.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

구역번호		토지이용		면적(㎡)		위 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특1	특1	의료관련 복합시설	의료관련 복합시설	54,019	54,019	의1	의1
특2	특2	의료관련 복합시설	의료관련 복합시설	64,395	64,395	의2	의2
특3	특3	주거, 상업복합시설	주거, 상업복합시설	35,986	35,986	복합1	복합1
특4	특4	주거, 상업복합시설	주거, 상업복합시설	57,490	57,490	복합2	복합2
특5	특5	컨벤션, 호텔	주거, 상업복합시설	62,548	62,548	복합3	복합3
특6	특6	주거, 상업복합시설	주거, 상업복합시설	78,300	16,628	복합4	복합4
특7	특7	컨벤션, 호텔	컨벤션, 호텔	97,743	97,743	복합5	복합5
-	특8	-	주거, 상업복합시설	-	17,301	-	복합6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특8	의1, 의2 복합1~6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영 제45조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 세부계획 및 기타계획 가. 사업계획의 개요 - 사업기간, 사업의 규모, 수용용도 나. 건축계획의 구상 중 추가사항 -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 건축물의 접지부 처리 구상(구조 및 용도) - 옥외공간계획(옥상이 있는 경우, 옥상조경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유관지침 이행사항 다. 경관계획 중 추가사항 - 주요 조망점에서의 시뮬레이션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1 특2	의1 의2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관광휴게시설
			권장	• 복합의료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0층 이하/2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3 특4 특6	복합1 복합2 복합4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권장	• 주상복합건축물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3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 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비 고		•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5 특7	복합3 복합5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권장	• 호텔, 컨벤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4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변경]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특1
특2</td><td rowspan="10">의1
의2</td><td rowspan="3">용도</td><td>허용</td><td>• 건축법시행령 별표9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 관광휴게시설</td></tr>
<tr><td>권장</td><td>• 복합의료시설</td></tr>
<tr><td>불허</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3">규모</td><td>건폐율</td><td>60% 이하</td></tr>
<tr><td>용적률</td><td>800% 이하</td></tr>
<tr><td>높이</td><td>10층 이하/2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h>도면
번호</th><th>위 치</th><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계 획 내 용</th></tr>
<tr><td rowspan="10">특3
특4
특5
특6
특8</td><td rowspan="10">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6</td><td rowspan="3">용도</td><td>허용</td><td colspan="2">• 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td></tr>
<tr><td>권장</td><td colspan="2">• 주상복합건축물</td></tr>
<tr><td>불허</td><td colspan="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rowspan="5">규모</td><td>건폐율</td><td colspan="2">60% 이하</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복합1,2,4,6</td><td>800% 이하</td></tr>
<tr><td>복합3</td><td>1,000% 이하</td></tr>
<tr><td rowspan="2">높이</td><td>복합1,2,4,6</td><td>30층 이하</td></tr>
<tr><td>복합3</td><td>40층 이하</td></tr>
<tr><td colspan="2">형태 및 외관</td><td colspan="2">•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배치 및 건축선</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td></tr>
<tr><td colspan="2">색 채</td><td colspan="2">•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td></tr>
<tr><td colspan="2">비 고</td><td colspan="2">•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td></tr>
</tabl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7	복합5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8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의 시설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창고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권장	• 호텔, 컨벤션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40층 이하
		형태 및 외관		• 옥상녹화 - 도시생태 복원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 옥외광고물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나.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다.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위치 및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색채		• 5.경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중 가.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의1 의2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교통처리계획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주차장의 설치 - 특별계획구역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함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권장)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times\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유비쿼터스 관련 사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특1 특2 특3 특4 특5 특6 특7 특8	의1 의2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복합6	교통처리계획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주차장의 설치 - 특별계획구역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시설의 경우 주거용도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며, '투수성포장'으로 함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권장)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거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 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 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igma(\text{공간유형별 면적}\times\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유비쿼터스 관련 사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U-City 사업'에 의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3,000)

- **별첨 1-마**